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8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최혜영·이상헌·윤관석

강선우 · 이광재 · 홍영표

박홍근 • 황운하 • 이수진

아수진비 · 이탄희 · 이규민

허종식 · 맹성규 · 김승원

양경숙 의원(16인)

제안이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 중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의무자를 일부 확대하며,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의실행을 담보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방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조문을 타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6항).

나.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폭행・협박 혹은 위계・위력으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응급조치, 현장조사,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조사 업무를 방 해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제9 0조제3항제3의5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인 제59조의7제6항을 삭제함(안 제86조제3항).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6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신건 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을 "성폭력피해상담소,"로, "그종사자"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 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

원

-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86조제3항제2호 중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을 "제59조의7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 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 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 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 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 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업법 시34조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 법률」 제7조에 따라 활동지 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원 급여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6조---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 5. (현행과 같음) 3. ~ 5. (생략)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 른 구급대의 대원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7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u>정</u> 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 사자

8. • 9. (생략)

-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산학겸임교사 등
- 11. (생략)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3. ~ 20. (생 략)
-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및 정신질환	7
원에 관한	
에 따른 <u>정</u>	<u>정</u>
장과 그 종	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
	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8.・9. (현행과 같음)
법」 제19조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은 법 제19	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
<u>문상담교사</u>	<u>자</u>
2조에 따른	
	11. (현행과 같음)
Ų 피해자보	12
률」 제10조	
해상담소의	<u>성폭력피해상담소,</u>
같은 법 제	
력피해자보	
종사자	<u>그 종사자 및 같</u>
	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 20. (현행과 같음)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신 설>

- ③ 삭 제
- ④·⑤ (생 략)
-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 영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의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생 략)

제86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여 하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
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u>자</u>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
④·⑤ (현행과 같음)
6
<u>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u>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⑦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 1. (생략)
- 2.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에 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 3. (생략)
- ④·⑤ (생 략)

1	(혀	해과	같음)
	(5)	~~	$\mathcal{T} = \mathcal{T} \mathcal{T}$

2. <u>제59</u> 조의7제2항·제3항 또는	
<u>제5항</u>	
0 /뉟케키 키 ()	

- 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